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·처리에 관한 조례안

[곽동환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2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27.

발의의원 : 곽동환 의원,
최재규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인 수집·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수거함 설치와 관리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에 대해 규정함 (안 제6조)
- 마. 폐농약 처리 등과 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7조, 제8조)
- 바. 폐농약 등 수집 장려금 지원에 대해 규정함(안 제9조)
- 사. 수집·처리 관련 공로에 관한 표창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농약관리법」 제2조, 「폐기물관리법」 25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·처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수집·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폐농약”이란 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.
2. “농약용기류”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·플라스틱·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(이하 “폐농약 등”이라 한다)의 체계적 수집·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·처리될 수 있도록 군수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.

제4조(수거함 설치 등)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분리·배출할 수 있도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 수거함(이하 “수거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.

제5조(준수사항)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처리하고 빈 용기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거함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)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“폐농약 수거의 날”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“폐농약 수거의 날”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 등을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가지 않고,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의 “폐농약 수거의 날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책임자에게 인건비 등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

제7조(폐농약 등의 처리) 군수는 수거된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를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업무 위탁)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·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·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 등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·처리한다.

제9조(수집 장려금 지급)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의 수집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장려금의 기준, 금액,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10조(표창) 군수는 폐농약 등에 대한 수집·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